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진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1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1월 1일

발 의 자 : 김진수, 송재형, 강감창, 주찬식,
박마루, 진두생, 이석주, 성중기,
우미경, 이상목, 박중화, 박성숙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건물 벽면에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벽면이용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대상에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건물을 추가함(안 제11조제2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는 적법하게 설치된
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,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
표시할 수 있다.

가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

나.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

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
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

라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건물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현수막의 표시방법) ① (생략)</p> <p>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,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,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11조(현수막의 표시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,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가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</u></p> <p><u>나.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</u></p> <p><u>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</u></p> <p><u>라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건물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